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101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3. 6. 16. 접수 제67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받았다.

〈표1. 보증내역〉

1	D	285,000,000	2022. 11. 9.	2023. 11. 8.	기업일반 자금대출	C은행 거창지점
2	E	180,000,000	2022. 11. 9.	2023. 11. 8.	기업일반 자금대출	C은행 거창지점

〈표2. 대출내역〉

1	D	285,000,000	C은행 거창지점	2022. 11. 10.	300,000,000
2	E	180,000,000	C은행 거창지점	2022. 11. 10.	200,000,000

2) 이 사건 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의 2023. 10. 12.경 부실(이자연체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C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1	D	2024. 1. 17.	285,000,000	7,490,492	292,490,492
2	E	2024. 1. 17.	180,000,000	4,520,953	184,520,953
합계	465,000,000	12,011,445	477,011,445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미회수된 자액은

2,381,744원이고,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갑 제7호증).

〈표4. 지연손해금을 내역〉

1	D	285,000,000	2023. 11. 9. ~ 2024. 1. 16.	69	1.5	808,150
2	E	180,000,000	2023. 11. 9. ~ 2024. 1. 16.	69	1.9	646,520
합계	합계	1,454,670				

다.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원고는 2024. 3.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앞서 본 대위변제금 477,011,445원(= 원금 465,000,000원 + 이자 12,011,445원), 미수위약금 1,454,670원, 법적절차비용 2,015,880원 합계 480,481,995원(= 477,011,445원 + 1,454,670원 + 2,015,880원) 및 그 중 위 477,011,445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지급명령이 있었고, 해당 지급명령은 2024. 3. 29.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차전 102382).

라.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5. 16.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한 뒤, 같은 해 6. 1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채권최고액 10억 원).

마.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소외 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항목과 2024. 2. 1. 기준 가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순번 1 내지 7까지의 각 부동산 감정평가액 기준 시점이 2024. 2. 1.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순번 1 내지 5까지의 각 부동산이다). 순번 8 차량의 경우 2019년식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1	경남 함양군 F 공장용지 4449.4㎡	582,871,400	갑 8
2	경남 함양군 G 공장용지 3993.6㎡	499,200,000	
3	경남 함양군 F H동	285,307,980	
4	위 H동 부속건물	285,307,980	
5	위 H동 사무소 및 직원숙소	345,600,000	
6	기타 건물(기계실, 작업장 등)	291,724,000	
7	기계 기구	224,005,000	
8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2019년식	20,960,000	갑 9-2
합계	2,534,976,360		

2) 소극재산 소외 회사가 보유한 소극재산의 항목과 2024년 1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1	은행	2018. 2. 28. 대출원금	350,000,000	갑 10
2	2018. 7. 19. 대출원금	482,869,293		
3	2020. 11. 9. 대출원금	175,000,000		
4	2022. 12. 30. 대출원금	11,193,332		
5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021. 2. 9. 대출원금	80,330,000	갑 11
6	2023. 3. 9. 대출원금	100,000,000		
7	근로복지공단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	7,000,000	갑 12
8	거창세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8,313,760	갑 13
9	J양병원	임대차보증금	250,000,000	갑 14
10	K	임대차보증금	5,000,000	
11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021. 11. 5. 대출원금	90,000,000	갑 15
12	L보증보험	2022. 10. 8. 구상금	80,000,000	갑 16
13	2022. 3. 23. 구상금	30,000,000	갑 17	
14	C은행	2020. 11. 11.자 대출원금	200,000,000	갑 1-1, 1-2
15		300,000,000		
16	M 관리기관 N중앙회	2023. 11. 13.자 2023카단10297 가압류 결정의 원인채권	68,122,735	갑 6-1
17	2023. 11. 20.자 2023카단10299 가압류 결정의 원인채권	50,364,676		
합계	2,288,193,7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양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2. 11. 9.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1. 마. 2)항 참조]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3. 5. 2. 소외 O이 소외 회사의 부동산(사업장)을 가압류하여(갑 제6호증)이 사건 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5. 2.자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2023. 10. 12.자로 사후구상권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사후구상금채권은 480,847,859원(= 대위변제금 477,011,445원 + 법적절차비용 2,381,744원 + 미수위약금 1,454,670원) 및 위 대위변제금 477,011,4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2024. 2. 1. 기준 적극재산의 가액은 2,534,976,36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23. 5. 16.에도 비슷할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소외 회사의 2024. 1.부터 2024. 4.까지 기준 소극재산의 가액은 2,288,193,796원이고(순번 16, 17 이외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대출원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도 해당 가액과 비슷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억 원)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의 가액이 1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보다 작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악의 역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8년경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여왔는데,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돈을 소외 회사가 갚지 않아서 지불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3. 6. 16. 해당 각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인바(답변서 참조), 이는 피고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도 해당 계약 체결 무렵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국

판사김용석

판사성재준

별지